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광업소 근로자가 야유회 준비 중 차량 사고로 사망한 경우

(89-74호 '89. 3. 20. 기각)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김○○, 배○○

주소: 충남 대천시 동대동

원처분청: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상 동

주소: "

피재근로자

성명: 김○○

주소: 충남 대천시 동대동

소속: ○○광업소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 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상의비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광업소 소속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88. 8. 4 충청남도 대천시 운암동 상현리 입구에서 차량충돌 사고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야유회 참석여부는 근로자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고 사업주는 야유회 경비 일부만을 지원하였을 뿐이며 피재자의 사망장소는 야유회 계획 장소와는 반대방향이며 피재자가 이용한 차량은 사업주 지시없이 피재자가 임의로 빌려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 (1989. 2. 23 김○○, 배○○)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2. 27.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12. 30 강○○)
4.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본(1988. 9. 24. 대천경찰서장)
5. 진술조서 사본(1988. 9. 8. 임○○)
6. 진술조서 사본(1988. 8. 26. 한○○)
7. 자술서 사본(1988. 8. 29. 임○○)
8. 확인서(1988. 8. 29. 정○○, 이○○, 김○○, 한○○, 박○○)
9. 진정서 사본(1989. 2. 10. 임○○)
10. 기타

이상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해간대, 피재자는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1988. 8. 24.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자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피재자는 총무과장 임○○의 지시에 의하여 야유회 준비차 대천해수욕장으로 여관방을 얻기 위하여 가던중 재해를 당하였고, 둘째:피재자는 총무과장 임○○의 지시에 의하여 ○○주유소 소유 꾸업을 빌려타고 갔으며, 세째:야유회 경비도 사업주가 부담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광업소 기본갱항장 임○○은 야유회 계획 당시 ○○화력발전소 옆 “솔”섬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1988. 6. 7. 야유회 개최 당일에도 ○○화력발전소 앞까지 갔다가 “솔”섬까지는 길이 험하여 갈수 없어 다시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갔다가 장소가 적당치 못하여 월전리 앞바다에서 야유회를 가졌다며 진술하고 있으며, 기본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 등 5명의 근로자도 위 진술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야유회 계획 장소는 “솔”섬으로 결정되었음이 명백하며 1989. 2. 10. 진정서에는 총무과장 임○○이 피재자를 야유회 준비차 해수욕장으로 다녀오라고 지시하였다 고 진정하고 있으나 1988. 9. 8. 보령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진술서는 당초 야유회 계획장소는 “솔”섬으로

결정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총무과장 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피재자가 총무과장 임○○의 지시에 의하여 ○○주유소 차량을 빌려타고 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총무과장 임○○은 1989. 2. 10. 자 진정서에는 빌려타고 가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정하고 있으나 1988. 9. 8. 보령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진술시는 특별한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빌려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세째:야유회 경비는 근로자 개인별로 20,000원씩 내어 충당하였고 회사에서는 현금 100,000원과 맥주 1상자와 음료수 1상자를 지원해주었을 뿐이며 야유회 참석여부는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였고 17명 중 11명만 참석하였으나 불참자에 아무런 불이익처분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야유회 참석이 강요되고 있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 인정할수 없다.

네째:총무과장의 지시에 의거 해수욕장 여관방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하나 당초 야유회 계획장소가 “솔”섬으로 결정되었고 총무과장 임○○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야유회가 사업주 관리하에 실시한 행사라고 인정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장소는 “솔”섬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해장소는 야유회 개최와는 관계없는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던 노상이었던 점으로 보아 피재자는 업무상 출장중 피재되었다고 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을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약품(주) 영업사원이 휴무일에 과장 인솔하에 농구 경기를 한 후 가슴이 아프다고하여 후송하였으나 “심근 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89-79호 '89. 3. 20. 취소)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주소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원처분청 :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김○○

주소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속 : ○○약품(주)

## 주 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8. 11. 17. 자 “김○○”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1. 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약품(주) 소속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88. 3. 17.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88. 9. 3. 15:10경 당일은 첫째 토요일로 정기휴무일이나 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소속과 전직원 9명이 정상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2:00경 과장

인솔하에 한강고수부지에서 농구경기를 하고 휴식 중 피재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안세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 6 및 제9조의 8에 의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동료직원의 진술에서 차장, 과장의 지시에 의한 출근이 밝혀졌고, 단합대회는 단위가 과, 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차장, 과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기, 목적, 경비충당 등이 업무상으로 보아야 하고 재해전에는 계속 과로하였고 격렬한 운동경기로 인하여 심장마비에 의한 심근경색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외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9. 3. 3. 김○○)
2. 원처분청 의견서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1. 11. 강○○)
4. 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 사본(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5.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8. 11. 행정서기 임○○)
6. 노동부 질의회신 사본(1988. 10. 25)

7. 사망진단서 사본(1988. 9. 5 안세병원장)
8. 의학적 소견회신 사본(순천향대학병원, 한양대학부속병원, 강동성심병원, 안세병원)
9. 문답서 사본(임○○, 민○○)
10. 진술서 사본(김○○, 임○○, 민○○, 이○○, 윤○○, 성○○)
11. 자료제출 요구서 사본(1988. 12. 1. 국회의원 노○○)
12.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전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약품(주)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토요일 오전근무 후 과장 지시에 따라 한강고수부지에서 농구경기 중 “직접사인:심장정지, 선행사인: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하자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자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첫째 토요일은 정기휴무일이나 소속과 전직원 9명이 정상출근하여 근무한 경위를 살펴보면 과장 “임○○”와 동료직원의 진술에서 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둘째:** 소속과 전직원이 오전근무를 마치고 오후에 한강고수부지에 가서 농구경기를 하게 된 것을 보면 과장 임○○의 지시에 의하여 과원 전원이 농구경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세째:** 농구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장 “임○○”의 진술에서 농구시합은 정상적인 규격이었고 소속과 직원들처럼 셀러리맨이 운동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내용과, 소속과 직원 전원이 한강고수부지에 12:00경 도착하여 12:40경부터 전반 10분간 하고 5분 휴식 후 후반 10분 경기를 끝낸 직후 심장정지 등으로 피재 사망하였으며

**네째:** 피재자의 피재전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과장 “임○○”의 진술내용에서 피재전일인 1988. 9. 2. 저녁에는 밤 12시가 다 되어 작업을 마쳤다는 내용으로 보아 육체적으로 과로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다섯째:** 피재자를 응급 후송 가료한 안세병원 소견내용을 보면 “피재자는 과격한 운동으로 인한 상대적 심장허혈 상태의 유발로 심장정지가 초래된 것으로 사료됨”이다.

이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토요일은 휴일임에도 근무하였고, 이어서 농구경기를 하게 된 경위는 담당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근무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재자의 행위는 순수한 사적인 단합대회로 보기에는 어렵고, 그러한 운동경기중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 피재되었으며, 동 피재에 대한 주치의 소견도 운동경기와 피재내용의 인과관계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피재자는 피재일 전일 오후 12시경까지 근무하여 피로한 상태에서 정기휴무일에 출근하여 오전근무 후 오후에 한강고수부지에서 과격한 운동도중 심장정지 내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에 기인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